

韓國의 搜查警察體制分析**

——首都圈의 對犯罪活動과 勤務實態——

安 海 均*

.....〈目次〉.....	
I. 序 章	IV. 韓國搜查警察의 實態分析
II. 搜查警察의 概念과 需要變化	V. 韓國搜查警察體制의 改善方案
III. 搜查警察體制의 機能分析	VI. 結 論

〈要 約〉

오늘날 우리 社會에는 각종 暴力 및 強力事件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犯罪의 급증은 社會不安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警察의 效率的 對應體制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本研究에서는 이러한 대응체제를 評價하고 政策代案을 경험적으로 도출하려는 데에 그 目的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에서는 首都圈의 각급 경찰조직(局·署)의 搜查警察體制의 운영실태를 分析·記述한 다음 搜查 및 刑事業務를 담당하는 警察官들을 대상으로 設問調查를 실시 그들의 對犯罪活動에 있어서 問題點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改善方案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I. 序 章

1. 問題의 提起

60년대 이후 급격한 產業化와 都市化 및 소득의 증대는 기존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변혁시켰으며, 이로 인해 犯罪의 양상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犯罪는 매년 量的으로 증가하였음은 물론 質的으로도 組織化, 兇暴化, 廣域化, 機動化, 年少化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產業社會로의 移轉段階라 할 수 있는 50~60년대에는 犯罪類型이 生計維持型의 刑法犯과 暴力集團 등이 큰 문제였다면 산업사회로 진입한 70년대 이후부터는 享樂과 致富를 위한 强力型 刑法犯과 特別法犯이 문제로 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青少年의 犯罪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犯罪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

** 韓國刑事政策研究院의 제 3 회 刑事政策세미나(警察의 犯罪對處能力 向上方案, 1990. 11)에서 發表한 論文을 改題하고 要約한 것임.

의 殘忍性도 날이 갈수록 度를 더해감에 따라 사회전반에 不安意識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質的・量的으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犯罪에 대해 이를豫防하고 鎮壓해야 할 警察體制는 여러가지 制約要因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警察의 責務가 個人的 生命과 財產을 보호하며, 犯罪의豫防, 鎮壓 및 搜查, 被疑者の 逮捕, 交通의 團束,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民生治安問題에 대해 심도 있는 論議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다. 특히 韓國의 搜查警察體制가 갖는 實態와 問題點을 정확히 파악하고, 搜查의 效率性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對應方案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本 研究의 範圍는 韓國의 警察體制 가운데 民生治安을 위협하는 搜查機能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民生治安 危害事犯이란 주로 殺人, 强盜, 竊盜, 暴力, 人身賣買 등과 같은 強力事件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事犯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도 경찰조직 가운데 刑事, 搜查 등과 관련이 있는 部署의 勤務實態를 파악하는 데 한정시키고자 한다.

研究의 方法은 文獻調查와 實態調查를 병행하였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1) 본 主題와 관련된 각종 研究報告書와 論文들, 그리고 治安本部를 비롯한 각급 警察機關의 業務現況과 統計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2) 작성된 分析資料를 중심으로 서울市 警察局의 强力課 및 산하 刑事係, 暴力係, 竊盜係의 擔當刑事,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强力事件의 발생빈도가 높은 江南警察署의 幹部와 非幹부를 대상으로 調查設計를 위한 의견청취를 하였다.
- (3) 調查設計의 内容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研究者가 1990년 8월 1일부터 8월 5일 까지 警察大學 「總警班」에서 강의를 하면서 警察署長 및 搜查 또는 刑事業務를 담당하는 總警級 幹部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韓國의 搜查警察體制의 實態와 問題點에 관한 의견청취와 함께 設問調查項目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 (4) 實態調查를 위해 서울과 京畿道를 비롯한 首都圈 지역의 警察署를 母集團으로 하고 3개 警察署(城南警察署, 議政府 警察署, 서울 南部警察署)의 搜

查課 및 刑事課에 근무하는 幹部와 非幹部 260名을 標本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5) 최수된 調査表는 통계처리를 통해 ① 選拔과 充員, ② 教育과 資質, ③ 勤務實態, ④ 搜查費, ⑤ 職務滿足度, ⑥ 人權觀, ⑦ 動員實態, ⑧ 其他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豫備調查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완하여 搜查警察體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II. 搜查警察의 概念과 需要變化

1. 搜查警察의 概念

犯罪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를豫防하고鎮壓하는 기능은 모든 나라에서 갖추어져 있으며, 이의 일차적인對應機能은警察이 담당하고 있다.

韓國의 警察官職務執行法 第1條에는 警察의 目的을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保護 및 社會公共의 秩序維持를 위한 職務遂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第2條에는 그 職務의 範圍를 ① 犯罪의豫防과 鎮壓 및 搜查, ② 警備·要人警護 및 對間諜作戰遂行, ③ 治安情報의 蒐集·作成 및 配布, ④ 交通의 團束과 危害防止, ⑤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규상에 규정된 警察의 任務 외에도 각종 行政事務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상의 論議를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警察任務는 ① 犯罪의豫防과 團束, ② 犯罪의鎮壓과 檢舉, ③ 犯罪誘發環境의 團束과 啓導, ④ 個人的自由와 權利保護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본 研究의 論題에 따라 搜查警察의 概念을 정리해 본다면 두 가지의 대립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廣義의 搜查警察概念으로 犯罪의 鎮壓과 檢舉는 물론 그러한 犯罪를 유발시키는 환경을 단속하고 지속적인豫防活動을 통하여 범죄발생을 억제시키는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견해이다. 오늘날의 범죄양상이 偶發性·衝動性·廣域性·機動性을 띠게 됨으로써 犯罪의豫防機能을 鎮壓機能과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견해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둘째는 狹義의 搜查警察concept으로 事前의인豫防機能을 제외한 事後의인 鎮壓과 檢舉機能만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견해이다. 즉 犯罪가 발생하고 난 뒤 범인을 추적하여 검거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警察組織上에 있

어서 刑事課 및 搜查課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搜查警察의 概念을 「殺人・強盜・強姦・竊盜・詐欺・暴力 및 放火事件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事犯들을 鎮壓・檢舉하는 組織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搜查警察의 需要變化

1960년대 이후 급속한 產業化의 過程을 거친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결과도 많았으나 그로부터 파생된 부정적인 결과 역시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긍정적인 결과로는 國民經濟가 擴大되고 각 개인의 所得이 증대됨으로써 韓國社會가 안고 있는 慢性的인 餓餓에서 해방되었다는 점과, 그 결과 과거에는 생각하기조차 힘들었던 “生活의 質”이라든가 “福祉” 또는 “餘暇”라는 단어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政府主導의 經濟成長政策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政治參與의 機會가 제한되고 사회의 다른 분야는 일차적으로 그 발전이 저지되는 權威主義 體制를 초래하였다라는 점은 부정적인 결과로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오랜 權威主義 政治體制로 부터 탈피하여 民主的・參與的 政治體制로 이행되는 轉換期를 맞이하면서 “參與의 爆發”로 인해 사회의 각 집단들간에 갈등과 대립이 침예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사회 질서에 위협을 주는 혼란상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바 “時局治安”에 대부분의 警察力이 집중되어 民生治安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이 같은 民生治安의 不在現象은 國民에 대한 與論調查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88년 9월 10일부터 실시된 韓國갤럽조사연구소의 社會犯罪指數의 조사결과를 보면, 1988년도의 경우 盜犯經驗率은 13% (84년도는 5%, 86년도는 11%)로 여덟 가구 중 한 가구 정도가 盜難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20.6%나 되었다. 또한 住居地의 治安狀態에 대해서 “집주위에 밤에 걷기 무서운 곳이 있다”는 응답율이 36.5%나 되었고, 서울의 경우에는 43.4%에 달하고 있다.

이상의 調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각종 犯罪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不安全感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質的量적으로 변화된 韓國의 犯罪環境과 搜查警察에 대한 需要變化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가. 犯罪의 量的 增加

198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의 總犯罪의 量的 增加는 다음의 〈表-1〉에 나타나 있다. 즉 198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89년도의 全國의 總犯罪 發生件數는 68%로 증가되었고, 서울의 경우에는 84% 증가하였다.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의 全體 人口가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하면 犯罪의 증가속도가 人口의 증가속도보다 5배나 빠르게 진행되어 온 것이다.

〈表-1〉 80년대 總犯罪의 量的增加推移 (單位: 件)

발생량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總 犯 罪	전국	實數 指數	620,710 100	631,950 102	655,183 106	786,930 127	784,708 127
	서울	實數 指數	172,500 100	178,854 104	196,423 114	242,743 141	238,705 138
발생량		년도	1985	1986	1987	1988	1989
總 犯 罪	전국	實數 指數	794,777 128	818,718 132	902,764 145	954,128 154	1,043,901 169
	서울	實數 指數	239,470 139	248,887 144	278,846 162		317,197 184

* 資料：治安本部，犯罪分析，1980~1990년 참조하여 再作成

나. 犯罪의 質的 變化

(1) 殘忍化

최근의 犯罪는 犯行動機의 유형에 관계없이 점차 잔인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犯罪의 殘忍性 또는 兌暴性의 정도는 전체 범죄 가운데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强力事件(殺人, 强盜, 强姦, 放火)과 暴力事件(暴行, 傷害, 霽迫, 恐喝, 略取, 誘引, 逮捕, 監禁)의 비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즉 强力事件의 증가율은 85년도에 비해 89년도에는 약 10%증가하였으며, 暴力事件은 같은 기간 동안 16% 증가하였다.

(2) 廣域化・機動化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 그리고 자동차 보급이 6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대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犯罪者들이 車輛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의 都心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삼십 분이 지나면 市 외곽으로 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4 시간이 지나면 全國의 어느 곳으로도 도주할 수 있을 정도로 犯罪는 廣域化・機動化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知能化

최근 범인검거의 어려움을 더해주는 또하나의 요인으로는 知能化를 들 수 있다. 점차 사회가 高學歷化되고 각종 베스寇의 영향으로 初犯者조차 指紋이나 遺留物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지능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한 完全犯罪를 기도한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4) 年少化

核家族化的 現象과 과도한 入試負擔, 그리고 缺損家庭의 증가로 전체 犯罪 가운데 青少年들에 의한 犯罪比率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8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青少年犯罪가 82년에는 32%, 83년에는 48%로 급증했고 89년에는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組織化

民生治安事犯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殺人・竊盜・暴力事件의 경우 최근에는 外國의 대규모 暴力組織처럼 位階制의 성격을 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같은 범죄자들의 組織化 傾向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犯罪波及效果는 심각하다. 즉 犯罪集團이 組織化 될 수록 이들을 鎮壓・檢舉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合法을 가장한 資金源을 가지고 永續性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Ⅲ. 搜查警察體制의 機能分析

서울을 비롯한 大都市의 搜查警察體制는 市 警察局(또는 道警), 警察署, 派出所의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각 단계의 搜查警察體制는 해당 지역의 地域的 特性이나 面積, 또는 人口密集度 등의 차이에 따라 搜查要員, 勤務實態, 運營方式 등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서울市警과 江南警察署의 경찰체제 가운데 搜查機能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우리나라의 搜查警察體制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警察局(서울市)

서울市의 搜查機能은 주로 強力課와 搜查課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搜查課는 告訴・告發事件을 주로 다루고 있고, 현장에서 범인을 진압하고 犯罪容疑者를 추적・검거하는 기능은 強力課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

미에서 본다면 民生治安 侵害事犯을 담당하는 主務部署는 強力課인 셈이다.

여기서 民生治安 侵害事犯이란 強力事件(强盜・竊盜・強姦・放火), 치기배事件(소매치기・들치기・날치기), 暴力事件(單純暴力・組織暴力・集團暴力)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들 사건들은 서울市警 強力課 소속 4개의 係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知能係(또는 刑事係라고도 부름), 盜犯係, 暴力係, 強力係가 그것이다. 이외에 組織暴力・非強盜・人身賣買 등의 犯罪를 소탕하기 위해 1989년 7월에 발족된 「特搜隊」가 있다.

이들 각 部署들의 機能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刑事係(知能係)

刑事係의 機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一線警察署의 搜查指導機能으로서 共助搜查를 하거나 犯罪手法을 啓導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자체 搜查機能으로 ① 특정 범죄가 一線署와 業者 사이에 알력 또는 유착관계가 있어 해당 관할 警察署에서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한 사건, ②署와署사이에 걸쳐 廣域的으로 발생한 사건, ③ 특정 범죄자가 둘 이상의 지역에 業所나 緣故地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警察機關으로는 일망타진하기 어려운 사건, ④ 檢察・治安本部 등에서 하달되는 下命事件 등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刑事係에서 주로 처리하는 사건은 公務員犯罪, 痘藥事件, 偽・變造事件, 컴퓨터犯罪, 不動產投機, 偽造商品販賣, 기타 特別法을 위반한 사건 등이 된다. 이들 사건들은 一線警察署에서 처리하기에는 고도의 搜查技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社會基本秩序의 核을 위협하는 중요범죄이기 때문에 警察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다.

나. 盜犯係

盜犯係는 管理班・手法班・贓物班・치기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管理班은 事務管理와 盜犯의 추세 및 경향을 분석하여 관련자료를 정리・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手法班은 詐欺事件이나 竊盜事件의 犯罪手法를 분류하여 이를 중심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贓物班에서는 전당포・고물상 등에 유통되는 장물을 중심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치기班은 소매치기・들치기・날치기 등의 사법을 전담하는 곳이다. 특히 치기班은 地上 소매치기 전담반과 地下鐵 소매치기 전담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暴力係

최근에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搜查를 전담하는 暴力

係는 다른 부서에 비해 위험부담이 높은 편이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이 日本의 「야쿠자」 조직을 뛰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한편 暴力係의 機能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廣域性을 띤 대규모 組織暴力이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는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일선 경찰서와 共助하여 搜查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一線署에 대해 組織暴力의 경향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搜查를 啓導하는 기능이다.

라. 強力係

強力係에서는 명백한 殺人・强盜・强姦・放火事件 등을 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3개의 班에서 다음과 같은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管理班으로서 強力係 내의 行政事務와 強力事件에 대한 情報提供을 주로 수행하며, 둘째는 強力班으로 여기에는 1개 班에 8~9명으로 구성된 3개 班이 强力事件을 수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명으로 이루어진 現場鑑識班이 있다. 現場鑑識班은 서울시 25개 警察署에서 발생한 强力事件에 대한 현장검증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暴行致死 또는 傷害致死는 強力係 소관은 아니지만 감식요청시 출동하여 현장감식을 수행하기도 한다.

나아가 중요사건인 경우 搜查本部를 설치하여 一線警察署 刑事課와 공조수사를 수행한다.

2. 警察署

본 연구자가 사례로서 선정한 江南警察署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도시의 一線警察署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機能

江南警察署 刑事課는 총 인원은 97명이나 실제 强力事件을 담당하는 刑事人員은 57명이다. 刑事課는 직제상 管理係와 刑事係로 나누어져 있는데, 형사과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9개의 班으로 편성되어 있다.

第1班 : 僞造・變造, 公務員 犯罪 등 市警 知能係에서 담당하고 있는 事件.

第2班 : (强力1班) 殺人, 强盜, 强姦, 放火事件.

第3班 : (暴力1班) 組織暴力事件.

第4班 : (도법班) 盗難事件.

第5班 : (치기班) 들치기, 날치기, 소매치기 事件.

第6班 : (防犯班) 江南警察署 관할 총 27개 派出所 중 특정 3개 과출소에 2人

1組로 배치되어 防犯業務를 수행.

第7班：(副防犯班·暴力2班) 야간의 호텔·나이트 클럽 등에서의 防犯활동과 범법자들이 입원해 있는 江南市立病院에서의 감시업무.

第8班：(强力2班) 强盜, 犯盜 등 强力事件의 처리.

第9班：交通事故處理班.

나. 勤務方法

이상과 같이 편제된 刑事課의 職員은 다음의 근무방법에 따라 순환근무를 한다.

1日：當直班으로 경찰서에 이송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보호조치한 후 調書를 작성하며, 때로는 범죄발생시 긴급출동하여 초동조치만 취해 놓는다

2日：當直雜務班으로 전일에 처리하지 못한 각종업무를 처리한다.

3日：防犯勤務班으로 주간에는 기소증지자 인도를 위한 출장을 가거나 병원감시업무를 수행한다.

4日：副防犯班으로 주간에는 금융가를, 그리고 야간에는 유흥가에 배치되어 방범활동을 수행한다.

5日：刑事기동대 차량(일선 근무자들은 동차라고 부름)의 근무班으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刑事기동차 6대에 1인씩 승차하여 순찰업무를 수행한다.

6日：동차휴무班으로 전날 刑事기동대 차량에 근무한 사람이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刑事課 산하 9개班 가운데 交通事故處理班과 强力班인 第2班과 8班은 순환근무에서 제외되어 담당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있다.

다. C³ 시스템

C³ 시스템은 1970년 美國 인디애나폴리스市 警에서 對犯罪 先制對應手段의 확보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C³시스템은 指揮(command), 統制(control), 通信(communication)의 3대 요소를 하나의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犯人檢舉의 效率性을 극대화시키려는 제도이다.

이러한 C³ 시스템은 江南警察署의 경우 犯罪의豫防과 鎮壓에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江南警察署에서는 「指令室」이라고 하는 별도의 C³운영실을 만들어 이곳의 책임자에게는 警察署長을 대신할 수 있는 統制 및 指揮權을 위임하고 있다. 특히 담당책임자는 오랜 搜查經驗을 지니고 管轄區域의 特性과 道路網을 자세히 알고 있는 警查 중에서 선발·임명하고 있다.

IV. 韓國 搜查警察의 實態分析

1. 選拔과 充員

搜查 또는 刑事分野에 充員된 과정을 알기 위해 任命節次를 파악한 결과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들어온 사람은 전체의 51.7%로서 134명인 반면에 上部의 任命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은 48.3%인 125명이었다.

특히 職級과의 관계를 보면 非幹部는 본인이 원해서 搜查分野에 임명된 사람이 많은 반면 幹部(警衛 이상)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搜查분야에 임명된 사람이 96%나 되어 高位職에 오를수록 本人의 意思와는 무관하게人事가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刑事課의 각 班長이 警衛 또는 警查라는 점을 감안할 때 係長級 이상은 대부분 본인의 適性이나 意思와는 상관없이 搜查分野의 幹部로 임명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 教育과 資質

搜查警察官이 갖추어야 할 資質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결과 使命感(27.0%), 法律知識(22.7%), 其他(20.3%), 搜查에 대한 適性과 感覺(18.8%), 강인한 身體와 武術(11.3%) 순으로 응답하여 使命感과 法律知識이搜查警察官이 되기 위한 중요한 要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搜查警察官이 갖추어야 할 資質 중에서 法律 知識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람일수록 調書作成 등의 업무에서 전문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搜查警察官들이 받는 教養教育 및 補修教育이 현재의 刑事 또는 搜查業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한 결과 調查對象者の 약50%가 대단히 도움이 되거나 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18%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 볼 때 搜查警察官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教育制度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搜查의 專門性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勤務實態

搜查警察官들의 勤務實態는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勤務時間으로써 조사대상자의 82%가 하루 14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搜查警察官들의 勤務時間과 관련하여 일주일에 평균 며칠이나 집에 들어가는지를 질문한 결과 5~6일이 21.9%, 3~4일이 57.3%로서 약 80%가 3일 이상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6.5%가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를 귀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4.2%가 되었다.

4. 搜查費

搜查警察官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搜查費의 부족이다. 搜查費는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휘발유와 같은 것으로써 搜查費가 부족하면 그만큼 搜查活動에 제약을 받게 될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搜查費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한지를 파악한 결과 月 25만원 이상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12만원임)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것은 搜查警察官들이 희망하는 사항이지만 88년 治安本部 搜查部에서 작성한 搜查要員 活動費 소요내역을 보면 위의 分析結果와 비슷한 232,500원으로 나와 있다.

한편 本研究者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出張費의 경우 출장을 다녀오고 난 뒤 출장비가 지급됨으로 인해서 당해년도豫算이 부족할 때에는 9월 이후의 출장비는 지급받지 못하는 예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것을 설문지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한 결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17.5%, “대부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8.8%를 나타내어 많은 搜查警察官들이 9월 이후의 出張費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 職務滿足度

搜查警察官들이 자신의 업무에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는 士氣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搜查警察官들에게 자신의 職業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6.2%가 대단히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35%는 대단히 불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런 편이라고 응답하여 만족보다는 불만족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질문은 응답자의 社會的 背景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學歷別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의 搜查警察官이라는 직업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搜查警察官에 임명된 경위와 職務滿足度와의 관계는 자신이 원해서 搜查 및 刑事分野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은 業務滿足度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6. 人權觀

최근 폭증하고 있는 각종 強力事件에 대한 警察官들의 각종 銃器使用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犯人도 人間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 역시 소중한 만큼 필요불가결한 상황이 아니면 총기사용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하면, 날뛰는 人身賣買・殺人強盜・組織暴力 등과 같이 일반인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危害를 입히는 事犯에 대해서는 총기를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治安活動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같은 논란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犯人檢擊와 人權擁護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民生治安을 책임지고 있는 搜查警察官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본다. 本研究의 실태파악에 의하면 犯人檢擊와 人權은 조화를 이루되 범인검거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2.0%,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면 인권은 다소 침해되어도 좋다는 응답이 17.8%로써 전체응답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범인검거보다 인권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하한 경우라도 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18.7%에 지나지 않아 범인검거를 훨씬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7. 動員實態

搜查의 效率性을 저해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搜查業務와는 무관한, 예컨대 示威鎮壓 등과 같은 업무에 動員되는 事例라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대상자를 중심으로 그 實態를 파악해 보았다.

搜查 또는 刑事分野에 근무하면서 示威鎮壓 등의 업무에 동원되는 사례가 한 달에 평균 1~2회가 전체응답자의 37.7%, 3~4회가 27.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응답자의 65%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달에 1회 내지는 4회 정도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7회 이상이나 동원된다는 사람도 15.6%나 되었다.

8. 其 他

지금까지 韓國의 搜查警察體制의 實態를 조사項目別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요컨대 搜查의 效率性을 저해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 바, 그 중에서도 대표

적인 것으로는 搜查要員의 不足, 搜查費의 不足, 搜查裝備의 未備, 搜查要員의 資質, 搜查와 무관한 動員, 當直事件의 폭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政策의 次元에서 위의 요소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며, 각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별적으로 政策支援을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搜查警察官들이 搜查의 效率性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았다.

調査結果에 의하면 10명 중 6명의 搜查警察官들이 搜查費의 절대적인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62.4%), 搜查와는 무관한 動員을 지적한 사람도 12.4%나 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搜查費의 부족을 해소하고 搜查와는 무관한 動員을 없애는 것이 搜查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先決課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搜查警察官들의 土氣를 진작시키기 위한 方案 가운데 가장 희망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債給 및 手當引上(30.7%), 昇進時 혜택부여 (28.4%), 言論 및 國民의 搜查警察官들에 대한 認定感(14.4%), 각종 福祉惠澤의 提供(10.8%), 搜查裝備의 現代化(8.3%), 業務의 輕減(7.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V. 韓國 搜查警察體制의 改善方案

搜查警察의 犯罪對應力を 좌우하는 要因은 크게 組織內的 要因과 組織外의 要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組織內의 要因이란 質的・量의으로 급변하고 있는 犯罪에 대해 韓國의 搜查警察體制가 機構, 人力, 豫算 및 裝備 등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로서 집약될 수 있다. 그리고 組織外의 要因이란 警察機構의 獨立, 檢察과 警察과의 관계에 있어서 搜查權 獨立의 문제, 搜查關聯機關間의 협조 및 住民의 협조 등과 같이 組織內의 要因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며 政治的 決斷과 社會的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들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本 研究의 論題에 따라 주로 組織內의 要因에 한정시켜 韓國搜查警察體制의 問題點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政策의 提言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搜查專門人力의 確保

韓國의 搜查警察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첫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

〈表-2〉 調査要員 所要人員 產出根據

(산출근거)

- 형사민원사건의 건당 평균 처리소요시간 : 16시간

보충조사 작성 : 3시간	수사보고서 작성 : 1시간
참고인조사 : 2시간	원표, 자료표 작성 : 1시간
증거물확보 : 4시간	송치서류작성 : 1시간
피의자신문 : 4시간	※ 합계 : 16시간

- 적정업무량 : 월 1인당 12.5건

- 365일 - 65일(공휴일) = 300일 × 8시간 = 2,400시간
- 2,400시간 ÷ 16시간(1건당 처리소요시간) = 150건(1인당 연간 처리가능 건수)
- 150건 ÷ 12월 = 12.5(1인당 월 처리가능 건수)

- 소요인원 : 3,252명

- 2,479명(현원) × 16.4건(1인당 월간 업무량) = 40,655.6건(전조사요원 월간 업무량)
- 40,655.6건 ÷ 12.5건 = 3,252.0명(소요인원)

- 부족인원 : 773명

- 3,252명 - 2,479명 = 773명

현 원	1인당업무량 (월 간)	적정업무량	소요인력	부족인원	비 고
2,479명	16.4건	12.5건	3,252건	773건	형사민원연간 426,070건

資料 : 1989년 治安本部 統計資料

〈表-3〉 刑事要員 所要人員 產出根據

(근 거)

- 범죄검거소요기간

- 사건발생 20일 이내 70%
 - 3개월 ~ 1년 이내 30%
- 연간 형사 1인당 적정 업무량 : 60건(월 5건)
- 소요인력 12,174명
- 7,515명(현원) × 8.1건(1인당 월간 업무량) = 60,871.5건(전형사요원 월간 업무량)
 - 60,871.5건 ÷ 5건 = 12,174.3명(소요인원)

- 부족인원 : 4,659명

- 12,174.3명 - 7,515명 = 4,659명

현 원	업무량 (월 간)	적정업무량	소요인력	부족인원	비 고
7,515명	8.1건	5건	12,174건	4,659건	이치사건 476,336건

資料 : 1989년 治安本部 統計資料

은 搜查專門要員의 부족이다. 1989년을 기준으로 볼 때 全體 警察人力의 17.2% 인 12,095명이 搜查業務(搜查, 調査, 刑事, 기타)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을 犯罪發生 總件數 對 搜查警察人員別로 보면 外勤刑事는 1인당 業務量이 月 平均 8.1件, 調査要員은 16.4件이 된다. 그러나 月 平均 適正業務量은 앞의 產出根據에서 보는 바와 같이 調査要員은 12.5件, 外勤刑事는 5件이다. 이를 토대로 1989년도의 調査 및 刑事要員의 所要人員을 산출해 보면 調査要員은 3,252명, 刑事要員은 12,174명이 된다. 따라서 調査要員은 약 773명이, 그리고 刑事要員은 약 4,659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表-2, 表-3 참조).

2. 搜查要員의 資質向上과 勤務與件

가. 優秀人力의 充員

최근에 부분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우수한 搜查要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음 選拔過程에서부터 特性화시켜 搜查專門人力을 充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幹部의 新規採用에서는 최근의 犯罪가 知能化・專門化되는 추세에 맞추어 大學에서 法學(法學科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을 공부한 사람으로 資格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幹部 중에서 搜查分野로任命할 경우에는 本人의 適性과 意思를 충분히 반영하여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在職者의 能力開發

일단 搜查要員으로 충원된 사람의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의 專門教育과 訓鍊制度가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教育에 있어서도 量的인 면보다는 質的인 면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상식적인 논리나 구태의연한 내용보다는 搜查業務와 관련하여 經驗과 理論을 겸비한 우수한 教官을 확보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停年을 앞둔 노련한 搜查警察官을 教官으로 활용하는 한편, 특정 분야의 지식전수(예컨대 컴퓨터나 화폐위조 등)를 위해서는 경찰관이 아닐지라도 그 분야의 전문지식인을 초빙하여 강의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하리라 본다.

한편 非幹部인 경우에는 신임교육과정에서 10시간 내외의 搜查教育을 받고 일선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非幹部에 대한 專門教育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搜查專門教育은 幹部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非幹部에 대한 교

육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실제로 事件을 접하고 搜查를 담당하는 직원은 幹部가 아닌 非幹部들이며, 이들이 최일선에서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등 수사업무의 일차적이고도 중요한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非幹부에 대한 專門化 教育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搜查의 效率性 提高에 기여하리라 본다.

다. 搜查警察官의 勤務與件

搜查에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搜查要員들의 勤務與件을 개선하고 搜查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本 研究의 實態把握에서도 지적된 것一样만 搜查警察官들의 勤務意慾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要因에 의한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① 과중한 業務量 : 이것은 搜查專門人力의 確保와도 관련된 문제로서 수사요원 개개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勤務意慾이 저해되고 있다.

② 搜查業務와 무관한 動員 : 이처럼 과중한 업무량도 문제지만 이들 가운데 순수한 수사업무와는 무관한 업무가 하루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더욱 문제가 있다. 예컨대 示威鎮壓을 위한 動員이라든가 각종 다른 업무에 동원되는 사례가 많아 搜查의 效率性과 勤務意慾을 떨어뜨리고 있다.

③ 懲戒의 過多 : 搜查警察官의 土氣를 저하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다른 部署의 근무자에 의해 搜查業務의 성격상 懲戒를 당하는 예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미 韓國搜查警察의 實態分析에서 기술하였지만 현재 搜查警察官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搜查費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족한 搜查費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사업무가 범죄용의자 또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外勤職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일부 搜查警察官들에게 독직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곧 독직행위에 따른 懲戒의 가능성성이 다른 部署보다도 그만큼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犯人을 검거하여 심문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物理力이나 暴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자칫 확대되면 背酷行爲가 되어 搜查警察官들이 징계를 받는 요인이 된다.

懲戒의 많고 적음은 手當이나 備給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昇進과의 관계이다. 경찰관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이 가장 바라는 사항은 승진과 봉급인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昇進을 試驗에 의하는 방법과 勤務實績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가운데 실적에 의한 승진은 징계의 많고 적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

능성이 높은 搜查警察官들은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시험에 의한 승진은 外勤職이라는 요인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내근적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불리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제언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모든 部署에서 승진대상자를 선발하기보다는 각 職務上의 特性別로 분류하여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内勤職과 外勤職으로 분류한다든가, 보다 좁게는 搜查課만을 통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일한 근무조건을 가진 대상자들 가운데 시험점수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적정 인원수를 승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搜查費의 現實化

搜查警察官에게 지급되는 搜查費는 두 종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搜查活動費로서 각 搜查警察官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1인당 12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事件搜查費로서 治安本部의 資料에 의하면 1989년도의 경우 평균 1건당 8,273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事件搜查費의 경우 搜查本部가 설치된 사건은 단 1건을 해결하는 데도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搜查活動費(또는 刑事活動費)의 경우도 交通費, 買食費, 協調者接待費 등을 계산하면 서울의 경우 최소한 하루에 7,750원, 한달에 25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搜查費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搜查費를 증액시켜야 함은 물론 搜查費의 지급방법을 보다 客觀的이며 合理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각 수사 경찰관들이 처리하고 있는 事件의 數라든가 犯人檢舉實績을 搜查活動費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強力事件의 경우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搜查警察官들에게 危險手當을 지급하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搜查費의 부족현상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리라 본다.

4. 搜查裝備의 現實化

마지막으로 각종 搜查裝備가 現代化되어야 한다. 사회기능이 점차 多元化·

專門化・情報化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犯罪 역시 知能化・組織化・機動化廣域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범죄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검문검색이나 탐문수사 등의 원시적인 방법만으로는 범인을 찾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나아가 公訴維持에 필요한 物的證據의 확보 없이는 범인을 효과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搜查가 科學的이고도 合理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搜查裝備의 現代化가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 先進外國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科學搜查裝備를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機動裝備(각종 수사용 차량), 通信裝備(무전기, 호출기 등), 監視裝備(赤外線 望遠鏡 등), 探知裝備(金屬探知機, 거짓말探知機, 音聲分析器 등), 採證裝備(指紋採取器 등), 鑑識裝備(指紋擴大撮影機, 레이저 指紋檢出機, 指紋自動分類機 등)들이 없다. 이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搜查裝備는 기초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그 숫자도 미약한 실정이다.

VII. 結論

國民이 일차적으로 바라는 것은 財產上 및 身體上의 安全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며, 나아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은 政府의 基本的인 義務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같은 義務를 이행하기 위해 政府는 民生治安確保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社會가 多元化되고 所得水準이 높아지면서 物質萬能主義・享樂主義・한탕主義가 만연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의 慾望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幸福과 生命까지도 서슴없이 짓밟는 暴力事犯과 強力事犯의 根絕은 어떤 政策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優秀專門搜查要員의 確保, 搜查要員의 資質向上과 勤務與件의 改善, 搜查費의 現實化, 搜查裝備의 現代化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